

1998. 11. 11
제81회 임시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 토 보 고**

운 영 위 원 회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 절차 :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 실시.

2. 협의 요청한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의 내용

- 협의요청일 : 1998년 11월 6일
- 협의요청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총무위원회
 - 사회도시위원회
-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
 - 감사의 목적
 - 소관부서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에 있음.
 - 감사시기 :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7일간)
 - 감사대상기관 : 17개 기관
 - 의회운영위원회 : 1개 기관
 - 기획총무위원회 : 7개 기관
 - 사회도시위원회 : 9개 기관
 - 감사위원회 편성 :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행함.
 - 감사 세부일정 : 각 상임위별 세부일정(별첨계획서 참조)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처리된 사무
 - 감사방법 :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 제출요구, 필요시 현장확인

- 주요감사 사항
 - 1998년도 예산집행사항
 -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 감사원, 중앙부처 및 자체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 1999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선언(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현황보고 청취(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보고)
 - 질문 및 답변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3. 기타 사항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첫째,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사무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을 제외하면 양 상임위원회의 총 감사 대상기관은 16개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라는 감사기간을 감안해 본다면, 모든 대상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서는 감사기관과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조직 및 임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의 감사대상기관의 선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규모가 적거나 중요도가 다소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사무의 선정에 있어서도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사항이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감사의 경우는 년중 수차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가 행하는 업무현황보고의 재판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가급적 평소의 업무현황파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현장확인감사의 성격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작년의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134건, 사회도시위원회 117건으로서 총 251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서의 발송시기와 유인물 발행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1주일에 걸쳐 만들어 냈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에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는 감사자료 작성업무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이는 행정업무의 마비현상과 나아가 대민업무의 소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감사기간에 즈음한 갑작스런 자료제출요구보다는 평소의 위원회 회의에서의 업무현황보고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 또는 감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 등의 요구는 가급적 자제하여 감사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자료관리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여 과거 위원회에 이미 입수된 자료에 대하여는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